■ 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

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
신청인	회사명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주소	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	책임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
협력모델	협력모델 선정일(예정일)
	품목명
	주요 내용

신청 사유	[ ] 허가・승인・인증・검증・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협력모델에 맞는 기준・규격・요건 등이 없는 경우
	[ ] 허가・승인・인증・검증・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・규격・요건 등을 해당 협력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
	[ ]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・승인・인증・검증・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협력모델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・기간・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
	[ ] 그 밖의 사유( )

신청내용	규제개선 필요 법령
	적용대상
	적용기간
	주요내용

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협력모델 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소재・부품・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1.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.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.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